

아주대학교 제16대 총장 임명을 위한 총장후보자 천거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
1 총장후보자의 자격 및 물색

가. 총장후보자의 자격 및 물색

- 1) 총장후보자는 학문적 소양과 윤리를 갖추고 리더로서의 덕망과 도덕성 및 신실성(信實性)을 겸비하고, 아주대학교의 건학이념을 존중하며 탁월한 국제적 안목과 경영능력을 갖추어 학교발전에 기여할 능력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.
- 2) 총장후보자는 총장 임기 만료일까지 만 65세에 달하지 않는 자(195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)이어야 한다.
- 3) 제1항 및 제2항의 기본요건 외에 총장후보자 자격에 대하여는 천거위원회의 회의를 통하여 정한다.
- 4) 총장후보자는 천거위원회의 회의를 통하여 정한 방식에 따라 천거위원회가 물색하며 총장후보자 수는 제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2 총장후보자 천거위원회

가. 총장후보자 천거위원회 구성

- 1) 교내·외의 유능한 총장후보자를 물색하고 총장으로서의 자격을 검증한 후 이사장에게 총장후보자를 천거하기 위하여 총장후보자 천거위원회(이하 “천거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- 2) 천거위원회는 총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각 구성단위 위원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가) 법인 대표 위원	3인
나) 대학평의원회 대표 위원	3인
다) 동문 대표 위원	1인
라) 외부인사 대표 위원	1인
- 3) 천거위원회 위원은 각 구성단위를 대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자를 이사장이 위촉한다.
 - 가) 법인을 대표하는 위원은 대우학원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추천한다.
 - 나) 대학평의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은 대학평의원회 의장이 추천한다.
 - 다) 동문을 대표하는 위원은 아주대학교 동문 중에서 총동문회장이 추천한다.
 - 라) 외부인사를 대표하는 위원은 덕망 있는 외부인사 중에서 이사장과 대학평의원회 의장

이 협의하여 추천한다.

- 4) 천거위원회 위원은 총장후보자로 피추천될 수 없다.
- 5) 천거위원회의 각 구성단위는 이사장이 천거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한 날까지 추천을 완료하여야 한다.
- 6) 이사장은 제5항의 기한 내에 추천되지 못한 천거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추천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최종 접수된 위원만으로 천거위원회를 구성한다.

3

천거위원회 회의

가. 천거위원회 회의

- 1) 천거위원회의 1차 회의는 위원이 확정된 후 7일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하되, 위원 중 최연장자가 주재하여 위원장을 선출한다.
- 2) 위원장은 필요시 천거위원회를 소집하며,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

나. 위원장 등

- 1) 위원장은 위원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·처리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. 위원장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연장자의 사회로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2) 천거위원회에는 실무와 기록을 담당하는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둘 수 있다.

다. 의사 및 의결 정족수

천거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천거위원회 운영에 대한 의사는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라. 위원회 운영원칙

- 1) 천거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천거위원회에서 정한다.
- 2) 천거위원회 위원은 업무처리에 있어 지연, 학연, 혈연 등 특정집단의 이익에 얽매이지 않고 학교 전체를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- 3) 천거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- 4) 천거위원회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서 위원 임명 전에 [별첨]의 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.

가. 총장후보자 검증

- 1) 천거위원회는 물색된 총장후보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증하여야 한다.
 - 가) 비전과 구체적 발전계획 (구체적 실천전략의 심층 분석)
 - 나) 역량 (리더십, 행정능력, 경영능력, 변화대응력 검증)
 - 다) 업적 (과거 수행한 주요 업적에 대한 분석)
 - 라) 학문적 윤리 (연구진실성 검증)
 - 마) 기타 천거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2) 제1항 라)의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하여 천거위원회는 학문윤리검증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3) 총장후보자 검증에 관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관련 내용 및 세부사항은 천거위원회 의결로써 따로 추가·삭제할 수 있다.

나. 총장후보자 천거

- 1) 천거위원회는 물색된 총장후보자 전원에 대하여 자격 검증 결과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정된 날까지 이사장에게 천거하여야 한다.
- 2) 천거위원회는 제출한 후보자 명단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
가. 기타사항

- 1) ‘아주대학교 제16대 총장 임명을 위한 천거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’에서 정한 기한 내에 해당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기한 연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.
- 2) ‘아주대학교 제16대 총장 임명을 위한 천거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’에 대하여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사장이 정한다.
- 3) 천거위원회는 이사장이 총장을 임명한 날로 자동해산 되며 천거위원회의 모든 관련서류는 법인사무처에 귀속된다.

